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 ·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 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1. 1. 26.>](#)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 상수도 · 철도 · 공동구(共同溝) ·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제방 · 호안(기슭 · 제방 보호시설) · 방조제 · 하굿둑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8. 6. 5., 2021. 1. 5.>](#)

②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 · 규모 · 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